

2013. 5. 23.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제안자 (제안설명)	비고
1507	충주시 노시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범로, 이호영 (윤범로)	의원 발의
1508	충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도로과장)	
1509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1510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연수과 (기술연수과장)	
1511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수도과 (상수도과장)	
1512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과 (상수도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건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15	5.15	5.22	5.22	윤범로	
충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5	5.15	5.22	5.22	도로과장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5	5.15	5.22	5.22	산림녹지과장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5	5.15	5.22	5.22	기술연수과장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15	5.15	5.22	5.22	상수도과장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5	5.15	5.22	5.22	상수도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29호, 2012.4.16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지역 내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을 모색하는 등 산업평화의 도시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가입하고자 자전거 보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객에게 선택적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행복숲체험원이 조성됨에 따라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가지수 상승률과 재정분석을 통하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4]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단체의 명칭 변경,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5]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2012. 4. 18.) 요구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6]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최소 폭으로 인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협의회 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안 제3조 제2항)
- 나. 실무협의회 조항을 신설(안 제9조 신설)
- 다. 분과위원회 근거 조항을 개정(안 제10조)
- 라.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 지원 조항 신설(안 제12조 신설)

②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 “자전거”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 나. 자전거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 다. 인용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③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행복숲체험원 사용료 신설(별표1 제1호)
- 나. 숙박시설 유형 통합 및 사용료 인상 (별표1 제2호)
- 다. 원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시간 조정
 - 현행 : 입실일 13:00 ~ 퇴실일 11:00
 - 조정 : 입실일 14:30 ~ 퇴실일 11:30
- 라. 감면 규정 조정(안 제6조)
 - 휴양림 등 숙박시설
 - 국가유공자나 유족 감면 내용 중 충주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형평성 고려

- 행복숲체험원 생태학습관(세미나실) 감면 규정 신설
 -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시 관내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할 때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4]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관련단체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5조, 제10조)
 - 충주시 4-H 후원회 → 충주시 4-H 본부
- 나. 조례 “정의” 와 관련한 인용법 개정 내용 반영(안 제2조)
 -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3항제3호, 5호 →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과 같은조 제3호다목, 마목
- 다. 기금의 존속 기한 신설(안 제4조의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5]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관리비용 부담 방법 개선 (제14조제3항 단서)
 -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⑥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수도 요금 인상 (별표 2)

- 톤당 평균 판매단가 : 707원 ⇒ 767원(8.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의안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등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보완·강화하고 구성과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노사민정간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노사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본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 됨.

②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개정안은

안 제7조의 2에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례 제7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긴 하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 됨.

③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문성자연휴양림과 그 안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곤충체험관, 숲속유치원 등을 총칭하여 행복숲체험원으로 명명하고 그 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1 제1호에 행복숲체험원의 숙박시설 외 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재정수입증대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으며 별표1 제2호에는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당초 건축연도 및 시설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 하던 것을 개·보수 등을 완료 하고 요금 유형을 한가지로 통합 징수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 판단 됨

다만, 별표1 제1호의 사용료와 별표1 제2호의 사용료 및 사용료 통합 인상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 됨.

둘째. 개정안 제4조에서는 입실 시간을 당초 13:00에서 14:30분으로 하고 퇴실시간은 당초 11:00에서 11:30분으로 개정하여 숙박 시설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했음 또한 체험원의 숙박시설을 제외한 각종 체험장의 기본 이용 시간을 09:00 부터 18:00 정하고 특정시설의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함은 적정하다 판단 됨.

셋째. 안제5조 사용료의 징수 방법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그리고 텔레뱅킹을 이용한 결제 방법을 삭제하여

현금결제에 따른 회계사고를 방지하고 현재 휴양림등 시설의 이용을 위한 예약금을 시설사용료 전액으로 사용일전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 하다 판단 됨.

넷째. 안제6조의 감면 규정에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충주시 거주자로 한정한 것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수혜를 확대 하고 행복숲체험원 내 생태학습관(세미나실) 사용료에 있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의 교육관련 이용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 판단 됨.

④ 충주시 농촌문화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충주시 4-H후원회를 충주시 4-H본부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또한

“충주시 4-H 후원회”를 “충주시 4-H 본부”로 명칭을 변경 하는 것은 ‘한국 4-H 활동 지원법’에 의거 4-H활동 주관단체로 선정된 한국 4-H후원회의 명칭이 한국 4-H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개칭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⑤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신규 세대에 대한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요구(2012.4.18.) 및 환경부장관 조례 개정 요청(2013.2.19) 사항을 반영 하는 것으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 연결공사 비용 외에 입회비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 됨.

[6]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 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최소 폭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887원이며 판매단가는 70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25.5%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충주시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된 8.4%를 인상한 톤당 평균판매단가 767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제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마련과 재투자를 위해 바람직하다 보여 짐.

5. 질의답변 요지

[1]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5명 증원 사유?

답변: 노사민정 위원 비율 형평성을 위해 증원(노사측 증원)

②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질의: 충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내구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타지인(동호회 방문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충주 홍보

답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2) 질의: 자전차 운행의 도로교통법 적용과 관련 일반상해보험으로 개별 보상가능하지 않은가? 이중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도로교통법상 대상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임.

(3) 질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적용 되는가?

답변: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시민도 자전거에 의한 사고시 적용됨

③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사항 없음

④ 충주시 농촌전문안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사항 없음

⑤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펜션 등 신규 건축으로 기존 마을 수량 부족현상 시에서 지원해결 해줄 수 있나?

답변: 검토해보겠음

(2) 질의: 신규 세대에 요구하는 입회비라는 것은 기존 마을 주민들이 수년간 조성한 마을 공동기금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신규세대에 요구하는 것으로 받을 수 없도록 조례로 근거를 만들게 되면 납부하지 않는 신규세대와의 왕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보여지는데 해결책 있나?

답변: 향후 소규모 마을하수도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국비(광특 등) 및 시비(요금)으로 충당하도록 할 방침임 신규 세대에 대한 따돌림등의 분쟁 발생 소지 해결문제는 보완 등 검토가 필요 함.

⑥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사항 없음

6. 심사결과

①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②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보류

③ 충주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⑥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